

『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』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11월 1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1월 26일

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기획예산담당관 박 영 일

#### 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# 다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
(안 제1조 ~ 안 제27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현 명 숙

- 본 『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』은
  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임.

### 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으로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일괄 정비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##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##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##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